

# 2023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(1차) 공고

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(SBA)은 민간의 우수역량(투자, 멘토링 등)을 통해 선투자된 기업에 R&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 기술개발 지원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. 이에 『2023년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(1차)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7월 14일  
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

본 사업은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'지정 운영사'로부터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및 운영사가 추천한 기업에 한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신청·접수가 가능합니다.

### 운영사 정의 및 기업 추천

- 투자재원을 보유하고 기업 선별·투자·멘토링 등 지원역량을 갖춘 민간투자사 (서울 소재 AC, VC, 기술지주회사, 기업형 투자사 등)로, 2023년 현재 10개사(불임1) 지정
- ①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대상 선정 (자체 기준으로 평가 수행)
  - ② 유망기업 추천 (연간 지원계획 대비 최대 1.5배수 이내, 추천권 범위 내)
  - ③ 유망기업 추천시 투자(확약)
    - \* (고유계정형) 최소 1억원 이상 투자
    - \*\* (펀드계정형) 최소 2억원 이상 투자 (단, 투자금의 50% 이상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)

## 1. 사업개요

### ■ 사업목적

-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사가 선별·투자(1~2억원)한 유망기업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, 서울 대표 혁신기업으로 성장 견인 및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R&D 생태계 조성

### ■ 지원규모 (1차)

- 10개 과제, 총 40억원(2년/최대4억원 이내)

구분	지원규모 (신규)	전체연구 개발기간	시지원연구개발비 (총연구개발비 구성비율)	추진일정		
				모집기간	선정	협약
1차	10개 과제	2년	최대 4억원 (75% 이내)	7.14.(금)~8.14.(월)	8월~9월	9월 말
2차	10개 과제	2년	최대 4억원 (75% 이내)	11월 중	11월~12월	12월 중

■ **지원대상**

- 7년 미만 서울 소재 중소기업(법인)으로, 운영사의 투자유치(확약) 기업  
 ※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‘법인설립등기일’을 기준으로 함

■ **총 연구개발기간**

- 과제당 최대 2년(’23. 9월로부터 최대 24개월)  
 ※과제 제반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기간 조정 가능

■ **지원금액**

- 과제당 최대 **4억원** 이내 (최대24개월)
  -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,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
  - 인건비, 시제품·시제품 제작, 안전성·유효성 평가, 시험인증 등 기술 사업화를 위한 R&D자금 지원
- 총연구개발비는 [시지원연구개발비(현금)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]로 구성
  - (시지원연구개발비) 총연구개발비의 75% 이내
  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총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부담
 ※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)의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체의 10% 이상  
 ※연구개발비 편성기준 및 세부사항은 ‘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’ 및 ‘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’ 참고

구분	총연구개발비 (가)	시지원연구개발비 (나)	기관부담연구개발비		
			총액(다)	현금(라)	현물(마)
구성	(나)+(다)	(가)의 75% 이하	(가)의 25% 이상	(다)의 10% 이상	(다)-(라)
<i>(예시)</i>	<i>533,334,000원 (100%)</i>	<i>400,000,000원 (75%)</i>	<i>133,334,000원 (25%)</i>	<i>13,334,000원 (2.5%)</i>	<i>120,000,000원 (22.5%)</i>

■ **지원분야**

- 서울시 핵심산업 4대 분야 및 서울비전 2030 핵심과제 기여 분야
  - 바이오, 핀테크, 로봇, AI, 교육, 뷰티·패션, 모빌리티, 친환경, 메타버스 MICE 등

■ **지원원칙**

-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불가
- 협약체결 시,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**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**을 제출해야 함
  - 보증기간 :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+ 6개월
  - ※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
  - ※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**30일 이내**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

## 2. 신청 자격

### 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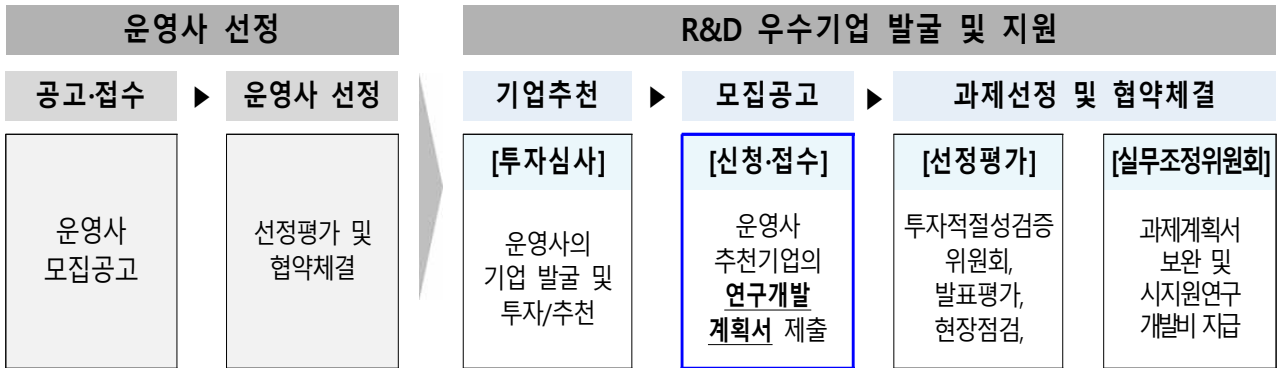
-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지정 운영사(별첨1)로부터 **1~2억원의 투자(확약)를 받은 후, 운영사가 배정받은 추천권으로 추천한 유망기업**
  - 단, 운영사와 기업 간의 체결된 투자계약일이 기업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
  - 유망기업 추천시 투자(확약)금 인정기준
    - (고유계정형) 최소 1억원 이상 투자
    - (펀드계정형) 최소 2억원 이상 투자 (단, 투자금의 50% 이상만 운영사 투자금으로 산정)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
  -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**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**으로, 서울에 주소지 및 사무실·연구소 등을 실제 운영
    - ※업력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‘법인설립등기일’을 기준으로 함
  -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
  - 운영사 투자 후 기업 지분 60% 이상, 운영사 지분 30% 이하
-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**서울시 내에 소재**하거나 혹은 **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*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법인 **중소기업**

### ■ 연구책임자의 자격

- 주관연구책임자: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- 공동연구책임자: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, 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, 연구자 등
  - ※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, 권한 및 책임은 ‘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’ 및 ‘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’ 참고

### 3. 추진절차 및 신청방법

#### ■ 추진절차



#### ○ 운영사의 기업추천

-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은 운영사(붙임1)별 자체 공모 참여, 투자심사역 면담,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문의(상시)
-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(확약)한 기업을 서울경제진흥원에 추천

#### ○ 모집공고 : 2023. 7. 14.(금) ~ 2023. 8.14.(월) 16:00

- 운영사로부터 투자(확약) 유치 후 추천받은 유망기업에 한하여 모집공고 기한 내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seoul.rnbd.kr)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(별첨2), 구비서류 등 작성 후 온라인 신청·접수

▶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→로그인→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
▶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

#### ○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

- (투자적절성검증위원회) 운영사와 기업 간 투자계약(확약) 내용 및 절차 등의 적절성 여부 검토
- (선정평가) 신청·접수 완료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우수성, 연구자의 개발 역량, 연구의 파급효과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·평가

$$\text{서류(발표)평가 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$

※선정평가는 과제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·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로 진행

※서류평가 기준, 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2배수를 ‘발표평가 대상’ 과제로 의결

※발표평가 기준, 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1.5배수를 ‘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’ 과제로 의결

- (현장점검)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'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' 과제에 대하여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장비,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조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을 제공해야 함
- (실무조정위원회)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, 재무현황, 평판, 서울시책과의 부합성,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

〈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세부 일정〉

공고 및 접수 (7월~8월)	선정평가 (8월말)	현장점검 (9월)	실무조정위원회 (9월)	선정결과 안내 (9월말)
운영사 추천, 종합관리 시스템 접수	▶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, 발표평가(요건검토)	▶ 제출서류 및 연구인프라 확인	▶ 선정과제 확정	▶ 홈페이지 공고, 공문발송

※상기 평가,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협약체결(SBA ↔ 주관연구개발기관) 및 시지원연구개발비 지급

■ **신청방법** : SBA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seoul.rnbd.kr) 업로드

- 신청 시 구비서류: **종합관리시스템(PMS)에 업로드(한글 또는 PDF)**

구분	서 식 명	대상		제출 형태
		주관	공동 (해당시)	
<b>신청·접수 시</b>				
추천서	주관연구개발기관 추천서(운영지침 별지서식 1-①호) <b>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</b>	○	X	PDF
투자 계약서 (확약서)	투자계약서 제출시 - 운영지침 <별첨2> 투자계약서 (별지1, 별지2, 별지3 포함) - 운영지침 <별첨3> 투자검토보고서 (별지1 포함) - 운영지침 <별첨5> 주주간 계약서 투자확약서 제출시 - 운영지침 <별첨4> 투자확약서 (별지1, 별지2 포함) <b>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</b>	○	X	PDF
계획서	[별첨2] 연구개발계획서(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 포함) <b>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</b>	○	X	한글 또는 PDF
전자 등록	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(주관연구책임자)	○	X	시스템 입력
	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(주관연구책임자)	○	X	
	최근 3년 간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 지원사업 수행 현황(주관연구책임자)	○	X	
서류	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증명원)	○	○	PDF
서류	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( <b>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</b> ) <b>※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제출</b>	○	○ (비영리X)	PDF

※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

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(발표평가 통과) 시				
해당시	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 (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,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 및 연구책임자(해당시)) ※공동대표일 경우 모두 작성,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 1인만 작성	○	○	PDF
해당시	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	○	○	한글 또는 PDF
해당시	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자료 등	○	○	한글 또는 PDF

※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 용량은 20MB

<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세부 일정>

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

- 공고문 확인 : SBA R&D지원센터 - 알림마당 - 사업공고 (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)
- 연구개발계획서 작성: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

② SBA 홈페이지(<https://www.sba.seoul.kr/>)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

-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,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,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진행
- ※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
- ※ 주관연구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, **개인회원**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

③ 종합관리시스템(PMS) 접수

- SBA R&D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seoul.mbd.kr/>) 왼쪽 하단 '종합관리시스템' 클릭 하여 접속
- 주관연구책임자 아이디로 PMS 로그인
-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클릭
- 기본정보, 과제분류, 연구개발기관, 참여연구자,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

◆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(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)

-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
- 좌측 메뉴: 기관정보 → 기관조회 →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

-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
- ※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, [저장] 후 추가 업로드 가능(**압축파일 업로드 금지**)
- 최종 업로드 후,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
- ※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,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(**제출 후 수정 불가**)

## 4. 지원제외 대상

- ※ 연구개발기관(장),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- ※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**신청 또는 평가대상**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, 선정 취소 가능
- ※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

구 분	내 용	
기관 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</li> <li>※ 연구개발내용에 유흥,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</li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</li> </ul>	
접수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</li> </ul>	
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형 R&amp;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</li> <li>※ 단,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&amp;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</li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&amp;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</li> </ul>	
	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(기지원, 기개발)이 인정된 경우</li> </ul>
	인건비계상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연구책임자(주관, 공동)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%를 초과한 경우</li> <li>※ 연구책임자(주관, 공동)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</li> </ul>
의무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,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,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</li> <li>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/ul>	
	신용 및 기업 상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업의 부도 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</li> <li>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</li> <li>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</li> <li>- (채 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채납 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해,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(채불사업자 포함)로 등록된 경우</li> <li>※ 채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(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채납·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채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</li> <li>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</li> <li>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</li> <li>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채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</li> </ul> </li> </ul>

구 분	내 용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 관련 문의처 &gt;</b></p> <p>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</p> <p>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→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</p> <p>-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경우</p> <p>- 최근 결산기준 전액자본잠식(완전자본잠식) 기업인 경우</p> <p>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, 상환우선주, 상환전환우선주(RCPS)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※ 부채비율·자본잠식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(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)</p> <p>①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</p> <p>②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따른 “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(채권은행 협약)”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(주채권은행에 문의)</p> <p>③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·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제12조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(①기업별 재무제표 확인(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, ②공장, 기계장치, 시설 등 구입(신축) 증빙자료)</p>
기타	<p>-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 <p>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연구개발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</p>

※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‘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’ 및 ‘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’ 적용

## 5. 기술료 징수 기준

- (기술료 징수대상) 최종평가 결과 ‘우수’, ‘보통’인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
- (기술료 징수방식) 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10%(중소기업 기준) 기술료 납부



## 6. 과제접수·수행 시 주의사항

-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, 위·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-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시, 연구개발기관(기관, 기관별 대표자, 연구책임자 등)은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-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’, ‘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’ 적용
-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
## 7. 문의처

### ■ SBA R&D정책팀

- 김민재 선임 : 02-2222-3833, mjkim47@sba.kr
- 양미소 선임 : 02-2222-3835, msyang@sba.kr

서울경제진흥원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,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
- 별첨 1. 서울형 민간투자연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사 목록  
2.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서